

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 회칙

제 정 2019.3.1.

1차 개정(전면개정) 2021.3.27.

2차 개정(부분개정) 2022.01.08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‘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(이하 본회)’라 칭한다. 약칭은 ‘역사교실’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역사 교육 관련자의 모임으로, 회원들의 연구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역사교육 발전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본회는 학교교육과 역사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회원 간의 교육 실천 공유
2.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도모
3. 교과 공동의 교육 연구 자료 개발
4. 회원들의 교육전문성 함양과 수호를 위해 필요한 일
5. 교육제도 및 교육 정책의 개선에 관한 일
6. 그 밖에 본회에서 의결한 사업
7.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실천하는 바에 해당하는 일

제2장 회원 및 재정

제4조(회원)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.

1. 자격: 회원은 초·중등 역사 교사 및 관련 교사, 역사교육 관련 연구자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으로 하고,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며, 제 4조 3항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으로 한다.
2. 종류
 - ① 일반회원: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,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 100,000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
 - ② 준회원: 기존 회원 중 연 30,000원의 회비를 지불한 회원으로,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
3. 의무와 권리
 - ① 의무: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외부 공유 및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.
 - ② 권리: 일반회원은 본회에서 관리하는 SNS와 홈페이지에 공유되는 자료 및 연수를 위해 발간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, 각종 강의 및 출판 등의 외부 사업 및 공모연수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 본회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,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 준회원은 본회에서 관리하는 SNS와 홈페이지에 공유되는 자료 및 연수를 위해 발간된 자료 제공받는다.
4. 회원 자격의 상실
 - ① 탈퇴: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- ② 본회의 회칙을 지키지 않거나,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

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5조(회계)

1.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2. 수입
 -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, 각종 사업 예산 및 수익금, 기타 연수회비 및 기부금으로 한다.
 - ② 본회의 익년도 회비 액수는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3. 운영
 - ① 수입과 지출은 연구회 운영비 계정, 연수 운영비 계정, 경상비 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.
 - ② 본회의 회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은 운영부에서 총괄한다.
 - ③ 당해 연도의 역사교실 재정의 잔액은 후년도 역사교실 구성을 위해 이월된다.
 - ④ 본회는 조직의 활성화와 회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,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4. 회계의 공개: 본회의 1년간의 회계 운영 사항은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조직

제6조(총회)

1. 목적: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.
 -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
 - ② 익년도 회장단 선출
 - ③ 본회 운영에 필요한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
2. 운영: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- ①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중에 개최한다.
 -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또는 일반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3. 개최: 총회는 출석한 일반회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일반회원의 합이 전체 일반회원의 과반수일 때 개최 가능하며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

1. 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그 밖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목적: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①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- ② 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③ 예산 결산서의 준비에 관한 사항
 - ④ 회칙의 작성 및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
 - ⑤ 신입회원의 가입 승인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
 - ⑥ 총회에 올릴 안건의 작성
 - ⑦ 익년도 회장단 선출에 관한 준비 사무
 - ⑧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
 - ⑨ 회장이 부의한 긴급 안건 협의
 - ⑩ 기타 본회 운영에 관련되었으나 본 규정에 없는 모든 사항
3. 운영: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4.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당해 기간의 사업 집행과 예·결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임원)

1.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의 임원을 둔다.
 - ① 회장 1명
 - ② 부회장 1명
 - ③ 간사 1명
 - ④ 운영위원 00명 이상
2. 회장단은 본회의 사업 진행에 필요할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실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9조(회장)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, 총회,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장단을 구성한다.
2. 구성
 - ① 회장은 부회장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며,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 및 구성된다. 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, 전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일반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.
 - ③ 임기: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,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부회장)

1. 부회장은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장의 회무와 회계 감사를 보조하며, 회장 유고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 회장, 부회장 모두 유고 시, 운영위원회에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.
2. 구성
 - ① 부회장은 회장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며,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 및 구성된다. 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, 전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일반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.
 - ② 임기: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,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)

1.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, 회장과 부회장을 보조하여 사무 처리를 총괄하고, 회계를 감사한다.
2. 구성
 - ① 간사는 회장단이 추천하고, 일반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한다.
 - ② 임기: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,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위원)

1.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, 회무를 심의·의결하고, 총회를 소집하며, 대표 유고 시 잔여 임기 동안의 임시 대표 1명을 선임하며,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.
2. 구성
 - ① 회장단이 추천하고, 일반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한다.
 - ② 임기: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,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.
3. 그 외 필요에 따라 인원과 역할을 정한다.

제13조(소모임) 본회의 일반회원은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. 소모임은 일반회원이 모여 일정 양식을 갖춰 모임계획서를 작성하면,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에 따르며,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2조(운영세칙) 이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.

부칙(2021.03.27. 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세칙) 제2조(목적), 제3조(기능), 제4조(회원), 제5조(재정), 제6조(총회), 제7조(운영위원회), 제8조(임원), 제9조(회장), 제10조(부회장), 제11조(운영위원), 제12조(간사), 제13조(소모임)를 신설 및 전면 개정함.